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문 정 애 위원 외 6 인

1. 개정이유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개정(안 제4조제1호)

3.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입법예고 : 필요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6.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간 회의 총일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결을 거쳐”를 “의결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날 이”를 “해당 집회일이”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10일”을 “1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를 “(심의 ·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4조에 따른”으로, “기타 의회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에 따른”으로, “기타 의회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연간 회의총일수)</u>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p> <p><u>제4조(정례회의 집회일)</u>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u>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 의결로 -----.</p> <p><u>제4조(정례회의 집회일)</u>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 해당 집회일이 ----- .</p> <p>1. ----- 1일-----.</p>

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생 략)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 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을 심의 · 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 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 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 항 이외의 정례회 등의 운영 ·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 의 규칙」을 준용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 · 의결) ①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 법 제134조에 따른 ----- 그 밖의 -----.

② ----- 법 제1 27조에 따른 ----- 그 밖의 -----.

제6조(준용) -----
----- 필요한 -----.